

의안번호 제103호

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윌일	2020. 8. 25.

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103호

제출연월일: 2020. 8. 25. 제 출 자: 논 산 시 장

1. 개정이유(배경·필요성)

-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과 관련 대행계약 해지의 범위 및 연장계약의 기간을 축소하고,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"생활 폐기물 수집 • 운반관련 안전기준 등"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.
- 또한, 태양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 패널 수거 관련규정 및 논산 시 폐기물 분리배출 확립을 위한 참여마당 운영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을 신설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의 대행계약(수의계약)을 위한 사추가(안 제7조제4항)
- 나. 연속2회 이상 탁월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계약연장은 연속2회 이내에서 연속1회 이내로 변경(안 제7조제6항)
- 다.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추가(안 제7조의3)
- 라.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및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배출방법의 추가(안 제7조제8항)
- 마.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시 적정무게 및 폐기물 밀도 등을 명시함.(안 제8조제10항)
- 바 폐기물 분리배출 확립을 위한 참여마당 운영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(안 제9조의2)

3. 참고사항

- O 관계법령
- 가.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
- 나. 「폐기물관리법」제4조, 제14조의5, 제15조
- 다. 「공직선거법」제112조제2항제4호
- O 기타사항
- 가.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나.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다. 규제 심사: 규제심사 대상아님
- 라. 입법예고
 - 1). 예고기간 : 2020. 5. 25. ~ 2020. 6. 16.(20일 이상)
 - 2).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마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- 바. 충청남도 소관 실과 : 환경안전관리과

□ 개정조례안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·운반업체와의 생활폐기물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
 - 1. 대행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
 - 2. 대행기간 중 평가 결과 「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」제21조제1항 별표 1의 평가등급이 탁월 이상으로 2회 이 상 평가를 받아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로부터 적격업체로 선정된 경우
 - 3. 제2호에 따른 업체선정과 대행계약 성실이행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, 시의회의원, 관련 시민단체,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시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「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」 제1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로대체할 수 있다.
- ⑤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연

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간 중 평가결과 평가 등급이 탁월 이상으로 2회 이상 평가를 받아 「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」제24조에 따라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으로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할 수 있다.

제7조제6항 중 "평가결과"를 "대행기간 중 평가결과"로 하며, "연속 2회"를 "2회"로, "2회"를 "1회"로 한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3(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생활폐기물 수집· 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, 재해·재난 및 행사 등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야간작 업과 병행하여 수집운반 할 수 있다.
 - ② 수집·운반 작업은 3명(운전자를 포함한다)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작업여건 및 인력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작업이 비효율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있다.
 - ③ 시장은 폭염·강추위, 폭우·폭설, 강풍,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 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8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 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 은 조 제9항(종전의 제7항) 본문 중 "1시"를 "6시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1시"를 "6시"로, "월요일"을 "월요일·목요일"로, "화요일"을 "다음 날"로, "1시까지만"을 "6시까지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종류별, 성질·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으며, 배출자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장소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시가 정한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.
- 8 가정용 태양광폐패널을 배출하는 자는 시 환경자원화센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반·보관·처리할 수 있다.
- 1. 5톤 미만의 가정용 태양광폐패널을 시 환경자원화센터로 직접 운반 · 처리하는 경우 별표 14에 따라 시 또는 읍·면사무소,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물 운반 시 휴대할 것
- 2. 가정용 태양광폐패널을 수집·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흐름,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 지 제11호서식까지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·기록 ·유지할 것
- 3. 가정용 태양광폐패널을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별표 15를 준수할 것
- ⑩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100L 규격봉투에는 20kg이하, 50L 규격봉투에는 10kg이하 등 폐기물 배출 밀도를 0. 20kg/L 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폐기물 분리배출 확립을 위한 참여마당 운영 및 보상) ① 시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분리배출 및 환경보전 활성화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보상성격의 시상금(유가증권 포함) 또는 시상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	환경과장	이 철 희
안	자원순환팀장	이 순 옥 (746-5531)
자	담 당 자	전 현 기 (746-5534)

□ 신·구조문대비표

쳙 했

및 처리대행) ① ~ ③ (생 략)

- ④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 집 • 운반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
- 1.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
- 2. 부도·파산 등으로 계약이 해 지된 경우

3.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 로 시장이 긴급으로 필요하다 개 정 안

- 제7조(생활폐기물의 수집 · 운반 | 제7조(생활폐기물의 수집 · 운반 및 처리대행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 - ④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 집 • 운반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
 - 1. 대행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계 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 한 경우
 - 2. 대행기간 중 평가 결과 '논산 시 생활폐기물 수집 · 운반 대 행업체 평가 조례 세21조제1 항 별표 1의 평가등급이 탁월 이상으로 2회 이상 평가를 받 아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 로부터 적격업체로 선정된 경
 - 3. 제2호에 따른 업체선정과 대행계약 성실이행평가를 수

받은 경우

- 4. 대행기간 중 평가 결과 「논 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·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1 제21조 제1항 별표 1의 평가등급이 탁월 이상으로 연속2회 이상 평가를 받아 청소대행업체 심 사위원회로부터 적격업체로 선정된 경우
- 5. 제4호에 따른 업체선정과 대 행계약 성실이행평가를 수행 하기 위하여 공무원, 시의회의 원, 관련 시민단체, 전문가 등 이 포함된 시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 다. 다만, 「논산시 생활폐기 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」 제14조에 따른 평가위 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

고 인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행하기 위하여 공무원. 시의회 의원, 관련 시민단체,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시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 다. 다만, 「논산시 생활폐기 물 수집 ·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| 제14조에 따른 평가위 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

⑤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 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할 수 있다.

- ⑤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열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간 중 평가결과 평가 등급이 탁월 이상으로 2회 이상평가를 받아 「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・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」제24조에 따라 우수업체등에 대한 포상으로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할 수있다.
- 1.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업체가 선정 되기 전의 경우
- 2. 대행기간 중 평가결과 평가 등급이 탁월 이상으로 연속 2 회 이상 평가를 받아 「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」제24조에 따라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으로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⑥「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・⑥------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」 제9------

- 9 -

조에 따라 <u>평가결과</u> 평가등급이 탁월 이상으로 <u>연속 2회</u> 이상 평가를 받은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연속 <u>2회</u> 이내로 한 다.

⑦ (생략)

<신 설>

<u>대행기간 중 평가결과</u>
<u>2</u> ছা
<u>1</u> ই

(7)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3(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생활폐기물수집・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, 재해・재난 및 행사등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야간작업과 병행하여 수집운반 할 수 있다.

- ② 수집·운반 작업은 3명(운전 자를 포함한다)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작업여건 및 인력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작업이 비효율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폭염·강추위, 폭우 ·폭설, 강풍, 미세먼지 등으로 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

제8조(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) 제8조(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) ① (생략)

<신 설>

② ~ ⑥ (생 략)

⑦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은 오 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 지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배출하여야 한다. 단, 토요일 오 전 1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 지는 배출을 금지하며, 재활용 폐기물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부터 화요일 오전 1시까지만 배 출한다.

<신 설>

취하여야 한다.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종류 별, 성질·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으며, 배출자는 분 리수거함이 설치된 장소에 생활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시가 정한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 출하여야 한다.
- ③ ~ ⑦ (현행 제2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)
- ----- <u>6시</u>----- 6시 ---------- 월요일·목요일 ----

<u>다음날</u> --- <u>6시까지</u> -----.

⑧ 가정용 태양광폐패널을 배 출하는 자는 시 환경자원화센터 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반 • 보 관·처리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1. 5톤 미만의 가정용 태양광폐 패널을 시 환경자원화센터로 직접 운반・처리하는 경우 별표 14에 따라 시 또는 읍・면사무소,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후 폐기물 운반 시 휴대할 것
2. 가정용 태양광폐패널을 수집 · 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흐름, 처리량 및 처리방법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및 관리대장을 작성・기록・유지할 것

 3. 가정용 태양광폐패널을 수집

 ·운반·보관·처리에 관한

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

 별표 15를 준수할 것

①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100L 규격봉투에는 20kg이하, 50L 규격봉투에는 10kg이하 등 폐기물배출 밀도를 0.20kg/L 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(폐기물 분리배출 확립을

위한 참여마당 운영 및 보상)
① 시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
분리배출 및 환경보전 활성화
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프
라인 및 온라인 참여마당을 운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 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보상 성격의 시상금(유가증권 포함) 또는 시상품 등을 경품으 로 제공할 수 있다.

붙임

비용추계서

-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- O 해당없음
- 2. 비용추계결과
- 가. 추계의 전제
- 나. 추계결과
- 3. 작성자

환경과장 이 철 희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「폐기물관리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①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,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고,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5(생활폐기물 수집 · 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

-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·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(이하 이 조에서 "안전기준"이라 한다)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 · 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안전기준,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)

-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생활폐기물배출자"라 한다)는 관할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.
-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·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,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, 성질 ·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
 - · 구에서는 <u>분리 ·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</u> 정하여야 한다.

□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|

제16조의3(생활폐기물 수집 · 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

-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(이하 "안전기준"이라 한다)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경우
- 2.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· 운반하는 경우
-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 준을 준수해야 한다.
- 1.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·운영할 것 가.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
- 나.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 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
- 2. 안전화, 안전조끼,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.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. 다만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

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<u>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</u>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가.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
- 나. 3명(운전자를 포함한다)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

다. 폭염·강추위, 폭우·폭설, 강풍,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조치를 할 것

□「공직선거법」

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

- ① 이 법에서 "기부행위"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하여 금전·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 - 4. 직무상의 행위
 - 가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 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(지방자치단체가 표창·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 의 수여를 제외한다. 이하 나목에서 같다)
 - 나.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
 - 다.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·자선행위